

군산시 공고 제2021-1278호

「군산시 말랭이마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말랭이마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말랭이마을 구성에 따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레지던스 창작인 입주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마을주민, 창작인, 관광객이 조화를 이루는 창작특화마을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창작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안 제3조)
- 나. 시설물 사용허가 일반사항 및 사용료
 - 1) 창작인 레지던스 입주 시 수익계약 방식으로 사용·수익 허가(안 제4조)
 - 2) 사용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정함(안 제5조)
- 다. 레지던스 입주 창작인에 대한 적격심사 및 선정 방식(안 제6조)
- 라. 레지던스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행위제한(안 제7조, 제8조)
- 마.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근대체험마을운영팀(☎063-454-5812)로 문의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전화, 팩스, 군산시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우)540-20 전북 군산시 절골2길 17-14(신흥동)

근대체험마을운영팀 사무실(전화 : 063-454-5812 / FAX 063-454-326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군산시 말랭이마을 운영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고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말랭이마을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랭이마을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말랭이마을”이란 군산시 신흥동 34-5번지 일원 근대마을 조성사업 부지로 주민 등이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지리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레지던스”란 창작이 입주하여 주거 및 창작활동을 겸하며 창작특산품의 생산, 판매 등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창작인”이란 레지던스에 입주하여 예술, 공예 등 창작활동과 말랭이마을 가꾸기 등 공익적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창작인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재산과 말랭이마을 조성사업, 마을 가꾸기 등 공익사업으로 생산된 생산물을 포함한다.

제3조(시설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창작인의 창작활동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인은 창작 관련 협업, 홍보 등을 위하여 협업자와 함께 말랭이마을 내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창작인은 시장의 동의를 받아 말랭이마을 관리시설 내에 창작물을 설치하거나 전시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말랭이마을 내 공익적 창작물의 설치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말랭이마을 내 공유재산을 주민을 위한 단체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관리위탁 된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말랭이마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말랭이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작인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시설의 증설 등 원상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종료 시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대로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이 원상대로 복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 사용 중단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말랭이마을 내 시설을 사용허가 할 때 시설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말랭이마을의 시설을 사용·수익허가할 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하원을 제출한 때

제6조(레지던스 입주) ① 시장은 레지던스 사용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창작활동 내용이 말랭이마을의 운영 목적에 부합 여부
2. 말랭이마을 내 화합과 협업 등 조화로운 주거환경 조성에 부합 여부
3. 말랭이마을의 발전과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 여부

② 사용자의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수익허가 잔여기간 동안의 대체 사용자를 선정할 경우 이미 심사를 마친 후순위자를 사용자로 정할 수 있다.

③ 레지던스 입주자 결원에 따른 제2항 외의 사용자 선정 시 및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2. 시장은 레지던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3. 사용허가 된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행위 제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위탁 또는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2. 주거안정을 해치는 소음, 악취, 분진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
- 3. 창작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의 상주 또는 과도한 출입으로 레지던스 목적에 반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창작활동을 중단하거나 수탁시설 또는 레지던스를 연속 15일 이상 폐쇄하는 행위

제9조(주민협의체) ① 말랭이마을의 생활환경 향상 등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말랭이마을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말랭이마을 내 공공사업의 추진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2. 마을주민의 공동 행사,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3. 말랭이마을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주민협의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며 창작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 등의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한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사용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탁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1-1297호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등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 [안 4조의2]
 - 의회 동의 요구안 내용 구체화 [안 4조의3]
-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수탁기관 선정기준·배점 및 선정결과 공개 규정 마련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6조의2]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명시 및 제척·기피·회피 등 관련 조항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안 제7조제2항, 제7조의2]
-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안 제14조의2]
 - 재계약 시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 등 내용 구체화 [안 제15조 제2항]
-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권고사항 반영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 삭제 [안 제10조]
 -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과도한 부담(기부채납)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10조의2]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 규정 정비 [안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 2021. 6. 17. ~ 7. 2.(15일간)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행정지원과(454-2253, FAX 454-2229)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산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민간위탁 이라”를 ““민간위탁”이라”로,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시산하기관”을 “시 산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탁기관 이라”를 ““수탁기관”이라”로, “시산하기관”을 “시 산하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수탁자를”을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탁자와”를 “수탁기관과”로 한다.

제3조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없는 한 이 조례가”를 “없으면 이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을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관리등”을 “시설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를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로, “얻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얻은 다음”을 “받은 다음”으로, “얻은 것”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과 심사항목별 배점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라”를 ““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을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으로, “심사”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다”를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및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협약체결등)”을 “(협약체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10조의2제4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한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통보하되”를 “통보하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중 “60일이내”를 “10일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탁기관은 위원회(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위원회, 별도 위원회가 없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과평가를 거쳐”를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u> 및 <u>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u>에 의하여 <u>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u>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u>시 산하기관</u>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04조제3항 및 「<u>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u>」에 따라 <u>군산시장</u>----- ----- ----- -----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민간위탁</u>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u>시장</u>의 사무중 일부를 <u>시산하기관</u>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u>수탁기관</u> 이라 함은 <u>시장</u>의 사무를 위탁받은 <u>시산하기관</u>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u>재위탁</u>” 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u>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u> 만료 후 <u>수탁자</u>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u>재계약</u>” 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u>위탁기간</u> 만료 후 기존 <u>수탁자와</u> <u>위탁기간</u>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민간위탁</u>” 이라----- ----- <u>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u>----- <u>시 산하기관</u>----- ----- -----. 2. “<u>수탁기관</u>” 이라----- ----- <u>시 산하기관</u>----- -----. 3. ----- ----- <u>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u>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u>수탁기관</u>을 -----. 4. ----- ----- <u>수탁기관</u>과 ----- -----.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단서 신설 2015.03.02.>

- 1.·2. (생략)
- ④ (생략)

<신설>

제3조(적용범위) ----- 관하여 ----- 없으면 이 조례에서 -----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

-----.

- 1. ~ 3. (생략)
- 4. --- 시설관리 등 -----

② ----- 각호 -----

-----.

③ -----

-----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
----- 받아야 한다. 다만,
----- 받은 다음 -----
----- 받은 것 -----

- 1.·2.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신 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생략)

②시장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3. 경제적 효율성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
- 5. 민간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방식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과 심사항목별 배점 등-----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
-----.

② -----
----- 제
5조에 따른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
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시장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6.10.3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④ (생략)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

----- “위원회” 라 -----.

1. ~ 4. (현행과 같음)

② -----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 -----

-----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및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10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증·개축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지휘·감독) ①·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

----- 체결하여야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

-----.

5. 제4호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한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지휘·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
----- 통보하
고 -----.

제13조(이의신청) ① -----

-----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15조(재계약)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위원회(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위원회, 별도 위원회가 없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과평가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③제1항에 따라 -----
----- 10일 이내 -----

-----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
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
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

③제2항에 따른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사유로 선정된 수탁기
 관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 ~ ③ (생
 략)

④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협약이 해
 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 . 다만-----

 ----- .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제1항에 -----

 ----- .

군산시 공고 제2021-1279호

옥서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전라북도 도보 제2792호(2021.05.14.)호로 세목(변경)고시된 『옥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옥서지구 배수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및 선연리 일원 (배수로 5조, 5,430m)	2019~2023(5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분할 전 지번)
토지	붙임파일 참조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설계도서등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와 공사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열람가능

- 1) 상기 토지는 고시문상의 토지분할 전 지번이며, 향후 손실보상은 분할 후 편입되는 지번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편입면적은 토지조서 참조)
-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1.6.15 ~ 2021.6.29.일까지(14일 이상) :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부(1층),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 063) 440-5721, 팩스 : 063) 463-8424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부(1층)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1. 06월이후(추후 개별 협의통지 예정 및 공고기간에도 보상가능)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 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감정평가 완료)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옥서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구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근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부 ☎063-440-57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군 산 시 장



옥서지구 배수개선사업 용지매수(수용) 대상조사

순번	토지소재지			토지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현황	공부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계									2,963.40			
1	군산	옥서	선연	1750-1	1750-16	잡	잡	734	31.00	박윤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03, 81동 1303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	군산	옥서	선연	1752-9	1752-16	대	대	225	13.00	김순덕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752-9	
3	군산	옥서	옥봉	1496-2	1496-4	구거	구거	66	10.00	심천석	1325	
4	군산	옥서	옥봉	1497-2	1497-5	구거	구거	66	9.00	지대천	1480	
5	군산	옥서	옥봉	1497-3	1497-6	답	답	3650	682.00	조정희	군산시 옥서면 원성산1길 50-2	
6	군산	옥서	옥봉	1979-1	1979-15	답	답	1417.1	155.10	김옥이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043	
7	군산	옥서	옥봉	1979-1	1979-6	답	답	1417.1	429.90	김옥이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043	
8	군산	옥서	옥봉	1980-1	1980-43	답	답	1357.7	278.00	김옥이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043	
9	군산	옥서	옥봉	1980-1	1980-20	답	답	1357.7	373.00	김옥이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043	
10	군산	옥서	옥봉	1979-4	1979-14	답	답	3318	87.00	김애순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41-1	
11	군산	옥서	옥봉	1979-4	1979-12	답	답	3318	71.50	김애순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41-1	
12	군산	옥서	옥봉	1980-2	1980-40	답	답	1629.9	202.50	송상호	1346	
13	군산	옥서	옥봉	1980-2	1980-22	답	답	1629.9	109.60	송상호	1346	
14	군산	옥서	옥봉	1981-6	1981-20	답	답	4947.1	100.80	장동철	옥봉리 58-10	
15	군산	옥서	옥봉	1981-11	1981-25	답	답	5024.7	90.70	오대운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54-2	
16	군산	옥서	옥봉	1985-6	1985-22	답	답	4835.5	100.50	강영숙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136 102동 1301호	
17	군산	옥서	옥봉	1984-11	1984-25	답	답	5095.4	134.40	정영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수로26번길 12-1, 202호(계산동)	
18	군산	옥서	옥봉	1987-4	1987-26	답	답	3320.6	85.40	심오목	1593	

옥서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지장물(수용) 대상조사

순번	소유자		소재지	지번 (이동전)	지번 (이동후)	내용	수량	단위	지목	비고				
	성명	주소												
1	박윤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03, 81동 1303호(압구정동, 한양아파트)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750-1	1750-16	일반매수(소유권이전)	31.00	m ²	잡					
						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점포)	36.40	m ²	잡					
						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주택)	75.90	m ²						
						목조스레트지붕(창고, 일괄)	1.00			일괄보상				
										시멘트블럭조(담장, 대문포함)	1.00			일괄보상
2	김순덕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752-9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752-9	1752-16	일반매수(소유권이전)	13.00	m ²	대					
						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식당)	231.00	m ²	대					
						정문부대찌게(영업보상)	1식			일괄보상				
						철재 계단	4.00	m ³		일괄보상				
						철파이프 전막지붕(가추)	7.00	m ²		일괄보상				
									목조 함석지붕(창고)	3.00	m ²		일괄보상	